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(개정 2015.7.1)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개정 2012.12.21),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(개정 2009.2.6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「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」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삭제에 따른 대체규정 적용
 - 개정사항 :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 제①항 제1호
 (현 행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
 (개정안) “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
 ○ 인용된 상위법령 명칭 반영
 - 개정사항 :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 제①항 제3호
 (현 행)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 (개정안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,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
3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
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
 ○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 ○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 다. 기 타
 1)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10.22 ~ 2015. 11.11.)
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 3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 제5조”를 “제2조제2호”로, “수급권자”를 “수급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수수료의 감면 등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제7조(수수료의 감면 등) ①----------. ----------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, 등록하는 제증명 등	1. ---------- 제2조제2호 ---------- ---------- -수급자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, 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5조, 「5·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, 등록하는 경우	3. ---------- ---------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--,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---, ---------- 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